차례

Part 1.

- 1. 노동조합 소개 / 2쪽
 - 노동조합이란
 - 노동조합의 유형
 - 상급단체 소개
 - 경희의료원 노동조합 소개
- 2. 노동조합이 하는 일 / 10쪽
 - 임단협이란
 - 임단협 외 노사 간 대화 창구
 - 조합워과의 소통
- 3.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18쪽

Part 2.

- 1. 임금에 관해 알고 싶었던 것들 / 21쪽
 - 임금에 대해
 - 승급에 대해
- 2. 근로조건이 궁금하다 / 27쪽
 - 근로조건
 - 휴직의 종류
 - 휴가의 종류
- 3. 단체협약으로 맺은 후생복지 / 34쪽

1.① 노동조합 소개

1.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자본과 사용자에 대하여 상대적 약자로 인정받아 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고 있으며, 이를 노동3권이라 한다.

● 노동3권

✔ 단결권: 노동자의 근로조건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같은 단결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노동자 각각의 단결 권을 보장하는 것과 노동자의 단결로 조직된 단체의 단결권의 보장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노동자 각각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은 각각의 노동자가 단체를 조직하고 가입한 뒤 단체행동을 벌일 때 국가나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것을 조건으로하는 계약은 모두 위헌에 해당한다.

- ✔ 단체교섭권 :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과 경제적·사회적으로 지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권리.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이 합당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을 때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때문에 쟁의행위에 정당성이 부여된다. 단체교섭권을 행사했음에도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노동조합에서는 유리한조건으로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게 된다.
- ✔ 단체행동권 :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파업·태업 등의 수단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요구 조건 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권리. 정당한 쟁 의행위는 형사·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타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사용자의 재산권을 부정하는 쟁의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는 법률에 따라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제 한하고 있다.

2. 노동조합의 유형

2.1 조직 대상에 따른 구분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을 기업별로 하여 결성된 노동조합을 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하고 산업 직군에 따라 조직된 노동조합을 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 예를 들어 전국보 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이에 속한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희의료원 지부와 같이 지부 형태로 조직된다.

2.2 가입 유형에 따른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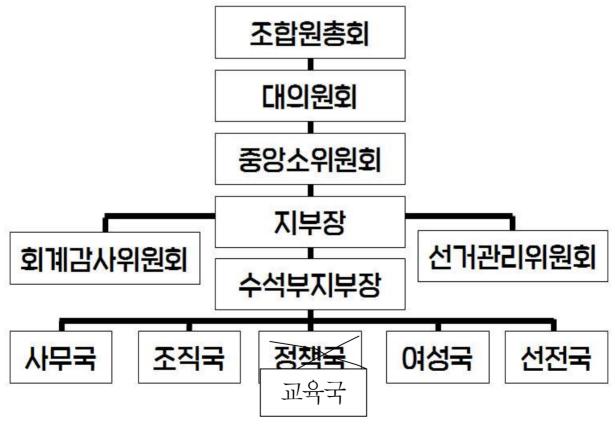
- ✔ 유니언 샵 : 채용된 노동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노동 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적인 형태의 노동조합. 경 희의료원지부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 ✓ 오픈 샵 :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와 조합비의 납부가 온전히 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형태의 노동 조합.
- ✓ 클로즈드 샵 :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고용의 조건이 되는 조직 형태이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고용계약도 해지된다.

3. 상급단체 소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산업적인 의제 해결을 위하여 1998년 출범한 보건의료부문의 전국적 노동조합이자 국내 최초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현재 전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 간호사, 간 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병의원 을 비롯한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주 가입 자다.

4. 경희의료원 노동조합 소개

4.1 조직 체계



4.2 구성단위별 선출과정 및 임무

지	임무	1)지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 장	선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임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수 석 부	임무	1)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 시 지부장의 임무를 보좌한다. 2)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지 부 장	선출	지부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조합원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0	임기	임기는 3년이고 연임 제한은 없다.			
보	맘	부지부장으로는 사무부지부장, 조직부지부장, 정책부지 부장, 연대사업부지부장을 둘 수 있다			
지 부 장	선출	지부장의 추천으로 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한다.			
0	임기	임기는 3년이고 연임 제한은 없다.			
회계	임무	회계감사는 년 2회 이상 또는 지부장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 감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지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지부장과 대의원회의에 보고하며, 조합 및 지역본부에 15일 이내에 보고한다.			
감 사	선출	지부장의 추천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임기	임기는 3년이고 연임 제한은 없다.			

✔ 노동조합 전임자

노사 간 합의로 본인의 업무를 면제받고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으로, 2010년 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면 제 한도가 조합원 수에 따라 정해져 있다. 2010년 노사 합의로 현재 경희의료원지부에는 5명의 지부 전임자가 활 동하고 있다.

✔ 지부 회의

- 1. 총회 2. 대의원회의 3. 임원회의
- 4. 집행위원회의 5. 중앙소위원회의

총회	구성· 소집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지부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 는 지부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1/3 이상, 회의에 부 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3.총회는 대의원대회로 대행할 수 있다.
	의결 사항	1.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등

대 의원 대회	구성· 소집	대의원대회는 선관위 규칙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소집은 다음과 같다. 1.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2.대의원의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 요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
	의결 사항	1.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지부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5.지부규정개정에 관한 사항
집행위	구성· 소집	집행위원회의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각부(차)장으로 구성하며 소집은 다음과 같다. 1.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집행위원 1/3 이상이 요구할 경우
원 회 의	기능	1.대의원회의의 수임사항 집행 2.대의원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조합 또는 지역본부의 결의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중앙소위원회의	구성· 소집	1.(구성) 대의원회의와 대체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부 장이 선임하는 집행위원 3인과 대의원회의에서 선 출된 6명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소집) 지부장이 요청하거나 중앙소위원 1/3 이상이 요청할 시 소집한다.
	기능	1.대의원회의 수임 사항을 처리 2.규정의 개정 및 개폐 3.선거관리위원 및 각종 위원 선출 등 4.조합운영에 대한 방침 및 대책수립 5.예비비 사용 및 항목 전용 승인에 관한 사항 등

4.3 조합 가입 및 탈퇴

✔ 가입

- 1. 조합원 범위에 속한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유니언 샵)
- 2. 1989년 11월 29일(유니언 샵) 이전 입사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자격을 취득한다.
- 3. 1989년 11월 29일 이후 입사자 중 조합원 범위에 속한 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 4.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탈퇴할 수 없으며 퇴직 시 자동 탈퇴된다.
- 5. 조합원의 범위에 속한 자가 비조합원 범위로 부서이 동(단, 전보만 해당)시 그 기간 (비조합원 범위) 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조합원 범위로 다시 이동 하였을 때는 그 자격을 취득한다.
- 6. 비조합원 범위에 속한 자가 조합원 범위로 부서 이동 (단, 전보만 해당) 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 탈퇴

- 1. 사망하였을 때
- 2.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 3. 퇴사 시

1.2 노동조합이 하는 일

1. 임단협이란

✔ 임단협이란? (= 임금과 단체협약)

노동3권 중의 하나인 단체교섭권에 의한 노동조합 활동을 말한다. 임단협을 마무리하면 "일 년 농사 다 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조합 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통해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인력이 충원되며,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우리 지부는 매년 단체 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과 단체 협 약을 체결하고 있다.

✔ 임단협 과정

간담회나 요구안 설문지를 통해 조합원 요구안 수렴

→ 대의원대회를 거쳐 요구안 확정 → 상견례를 시작
으로 교섭 시작 → 교섭 → [교섭 결렬 → 조정신청

→ 조정 실패 → 파업] →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잠정 합의 →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 조인식

✔ 교섭 형태

산별교섭: 산업별 노조의 대표인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과 각 지역 본부장이 노측위원으로 하며, 사측위원은 특성별 병원 대표자가 참가, 대 정부 요구안이나 산업별 의제를 가지고 교섭

현장교섭(지부교섭) : 우리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섭,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 전임자와 교섭 전 기간동 안 함께하는 교섭 전임자, 그리고 일일 교섭위 원이 노측대표. 사측은 의료원장을 비롯한 3개 병원장, 행정처장, 본부장, 팀장으로 구성됨.

본교섭: 노사 각 대표자 및 교섭위원이 참여하는 교섭 실무교섭: 본 교섭 이후 노사 양측의 실무 교섭위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섭

✔ 조정 신청이란?

노사간 자율 교섭이 진행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조 정을 신청하게 되며, 조정신청 후 15일이 지나도 조정 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자율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단협 과정이 길어집니다. "교섭 결렬 → 조정 신청 → 조정 실패 → 파업" 과정이 추가된다.

✔ 조정 기간 동안의 활동

본교섭과 실무교섭 등 자율 타결 의지를 가지고 교섭을 진행한다. 동시에 노동위원회 위원과의 면담을 위한 추 가 자료를 만들며 조정회의에 참가한다. 또한 파업준비 를 위한 철야 농성을 하며 더 집중적으로 순회와 간담 회를 진행한다. 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도 진행한 다.

✔ 파업 전야제

파업 전야제를 통한 단체행동을 통해 사측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 교섭 내용과 조정결과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 파업

단체 행동권에 의한 노동조합 활동, 조합원 총회라고도 한다. 병원사업장은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른 필수인원 을 제외하고 파업에 돌입한다.

필수유지업무제도란?

- 병원을 비롯한 전기, 가스, 철도 등 필수공익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봉쇄해왔던 직권중재제도(국가 기관이 직권으로 조정·중재를 행함으로써 쟁의행위를 종결시킴, 사실상 파업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폐지되면서 2008년 1월부터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는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이 파업 시 일정수준 유지해야 할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제도다.
-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기본 전제는 일상이 아닌 파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공익을 위한 배려이지 사용자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의사들의 학회 참석, 개인 사유에서의 수술은 연기되어도 노동조합의 파업 시에도 수술은 반드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사용자는 공익을 내세워 파업권을 원천 봉쇄(파업참가자의 50%내에서 대체노동자 사용 가능, 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권이 유효)하면서 이윤 유지와 사익 채우기에 급급하다.
- 병원사업장에서 필수유지업무는 응급의료/중환자치료/분

만/신생아간호/수술/투석과 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마취/진단 검사/영상 검사/응급 약재/치료 환자식/산소공급/중앙공급실/비상발전/냉난방이 속해 있다.

- 필수 유지 업무의 유지 비율에 따라 대상 직무의 필요인 원(근무하는 사람)을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마취업무의 마취회복실간호사(=대상직무)는 현원 18명 중 70% (유지 비율)인 13명이 필요인원이 되며 13명의 인원에는 기존의 휴가사용, 오프 등이 포함되어 그 인원에서 해결해야한다. 즉 근무조당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지 근무형태의변화, 휴가사용 제한 등은 올바른 적용이 아니다.

알아두세요!

- 필요 인원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개시 전에 노동조합이 통보하는 것이다.
- 필요 인원으로 지명되어도 근무외 시간에 집회에 참여 할 수 있다.
- 필요 인원으로 지명된 자와 파업 참여자는 명단 통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필요 인원에는 기존 오프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인 원이 포함된다. (휴가나 오프를 못 쓰도록 강제할 수 없다)

2. 임단협 외 노사 간 대화 창구

✔ 노사협의회

노동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기 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

O 위원구성: 노사 동수

ㅇ 시기 : 분기별 개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이 법에 근거해 산업안전 보건위원회가 열리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고 있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병원 환경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O 위원구성: 노사동수(6인)

ㅇ 시기 : 분기마다 소집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O 심의 의결한 사항은 노동조합 게시판 등 적절한 방법으로 1주일 이상 공지.

Part 1.2 노동조합이 하는 일

✔ 인사소위원회

조합원의 배치전환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나 인사규 정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고충을 수시로 논의

O 위원구성: 노사 동수

ㅇ 시기 : 수시로

✔ 폭력방지위원회

직장내 괴롭힘 및 감정노동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 전적·사후적 조치에 구체적인 시스템을 노사가 논의

✓ 업무개선위원회

직종간 명확하고 합법적인 업무분장의 확정과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실질적인 업무 개선 논의

3. 조합원과의 소통

3.1 순회, 간담회, 각종 선전물

✓ 순회

병동순회: 병동을 중심으로 근무에 맞추어 조합원을 만나고 현장 방문하여 현장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함께 논의하고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순회하고 있다.

상시순회: 병동과 달리 상시근무이므로 부서별로 가능한 시간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순회한다.

✔ 간담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합의 일상 활동,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 설명, 조합원이 해야 할 일 등을 같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조합 활동

✓ 각종선전물

대자보, 소책자, 속보, 카카오톡 채널 등을 활용하여 조합 원에게 노동조합의 소식을 전한다.

3.2 조합원과 함께 즐기기, 참여하기

✔ 노동조합 행사

딸기밭 체험, 야구관람, 영화보기, 연극보기, 역사기행, 가을산행, 플로깅, 헌혈행사, 캠핑대회, 송년회 등

1.3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권리

- 1. 조합원은 대표자 및 대의원에 입후보할 권리가 있다.
- 2. 조합원은 회의 개최를 요구할 권리와 공개회의를 방청할 권리가 있다.
- 3. 조합원은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권이 있다.

✔ 의무

- 1. 조합원은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 2. 조합원은 총회(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특별 부과금 납부 의무가 있다.

✓ 조합원의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신분 또는 재산상 기타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총회(대의원회의)의 결의로 소송 비용의 부담, 증언 및 유리한 판결을 위한 제반 활동 및 기타 보상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노동조합에서 한다.

✔ 생활비 지급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해당 조합원의 평균 임금의 130%를 지부의 기금에서 지급한다. 사후에 부당 해고 판결로 복직하는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복구된 경우 노동조합에 돌려주어야 한다.

✔ 대표자 선거

조합원이면 누구나 자격이 있다. 대표자 출마를 원하면 본 조규정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대의원 7인의 추천(중복 추천 가능함) 또는 지부 조합원 1/30이상 1/20미만의 추 천을 받아 마감 시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면 된 다.

✔ 대의원 선거

- 1. 선거구는 직종별 부서별(병동과 외래는 직종별)을 원칙으로 한다.
- 2. 조합원 30명 당 1인씩 배정하고, 15명 이상에 대해 1명추가한다.

✔ 조합원 하루교육

본부합동교육: 매년 4월~5월에 진행하며 서울지역본부 산하에 있는 여러 병원들이 참여한다. 타 병원 조합원들과의 교류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여러가지 알찬 교육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다.

지부하루교육 : 봄에 합동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과 참여 형식으로 우리 지부에서 진행한다.

단체협약 내용)

갑은 조합원 교육을 위하여 연 8시간의 교육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갑은 을이 제시하는 교육기간 1일에 부서별 1명이상의 인원을 배정하여 1일 50명~60명의 조합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공가를 보장하며, 참석 가능한근무표를 작성한다.

✓ 신규조합원 교육 신규조합원으로 발령 후 노동조합에서 3시간 동안 오리엔 테이션을 진행한다.

단체협약 LH용) "갑"은 신입직원 입사시 조합 임원이 조합을 소개할 수 있는 3시간을 제공한다.

공기란?

공적으로 받는 휴가를 말하며 아래에 해당할 때 노동조합에서 의료원에 신청한다. 총회, 대의원대회, 회계감사, 집행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상급단체 회의 및 교육, 조합원 하루교육 1년에 8시간, 신규조합원 교육 3시간 등

※ 간호부의 경우 공가 받는 날이 off여도 off가 소멸하지 않음

2.1 임금에 관해 알고 싶었던 것들

대부분의 조합원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지 만, 새로 입사한 분들이나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월급봉투 를 한번 뜯어보자.

지급 항목을 보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위험수당, 중식비, 교통비, 면허/기술수당 등이 있다.

2021년 3월부터 정근수당 중 100%는 통상임금화하여 매월 균등 지급하고, 개인별 초과되는 정근수당 지급분은 3월, 9월 급여일 재직자에게 지급한다. 상여금 930%와 정근수당 100%, 총 1030%를 열두달로 나눠 매달 85.83% 지급한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사학연금, 갑근세 등 원천 징수되는 공제 항목들이 있다.

※ 월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급여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 정리했다. 명절수당은 명절이 있는 달에 월급과 별도로 명절 직전 지급된다.

Part 2.11 임금에 관해 알고 싶었던 것들

1월	상여금 85.83%			
2월	상여금 85.83%		당 (70만원) 휴 직전)	
3월	상여금 85.83%		0% 초과하는 당의 절반	
4월	상여금 85.83%	체력단련비 (1년간 받는 통상임금의 1%)		
5월	상여금 85.83%			
6월	상여금 85.83%	자기계발지원비 (35만원)	하계수당 (30만원)	
7월	상여금 85.83%			
8월	상여금 85.83%			
9월	상여금 85.83%		0% 초과하는 당의 절반	
10월	상여금 85.83%	체력단련비 (1년간 받는 통상임금의 1%)	명절수당(70만원) (추석 연휴 직전)	
11월	상여금 85.83%			
12월	상여금 85.83%			

1. 임금에 대해

-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뜻한다. 통상임금이 각종 수당과 체력단련비의 기준이 된다.

2019년 9월부터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720% 적용되었으며 2020년 1월부터 820%, 2021년 1월부터는 930%를 적용하여 각종 수당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2021년 3월부터 정근수당 중 100%는 통상임금 화하여 매월 균분 지급하고, 개인별 초과되는 정근수당 은 3월, 9월 급여일 재직자에게 지급한다.

※ 통상임금 = 기본급 + 행정·진료·기술·연구·면허수당 + 위험수당 + 원무회계수당 + 보직수당 + 통상 상여금 + 중식비 + 교통비

Part 2.11 임금에 관해 알고 싶었던 것들

✔ 정근수당

입사 첫 해에는 통상임금의 100%가 정근수당으로 지급된다. 통상임금화하여 매월 균분 지급된다. 11 년차부터 정근수당이 통상임금의 총 200%가 된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100%	110%	120%	130%	140%	150%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太) 이상
160%	170%	180%	190%	20	0%

✔ 체력단련비

1년간 받는 통상임금의 1%씩 두번(4월, 10월) 지급

✔ 상여금 지급기준

- 연간 상여금은 930%이며, 매월 균분 지급
-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교통비와 중식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 상여금 = 기본급 + 행정·진료·기술·연구·면허수당 + 위험수 당 + 원무회계수당 + 보직수당

✓ 장기근속수당

만 4년차 때부터 지급되는 수당이며 근무기간에 따라

Part 2.11 임금에 관해 알고 싶었던 것들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다.

▲ 4년~8년 : 4만원 ▲ 8년~12년 : 6만원

▲ 12년~16년 : 8만원 ▲ 16년 이상 : 10만원

✓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직계 부모와 자녀, 배우자에 대해 지급된다. 부부나 형제 등이 함께 의료원에 근무할 경우에는 한쪽으로만 지급한다.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증명서를 가지고 인사팀 방문하면 된다.

▲ 배우자 : 2만원 ▲ 자녀 : 1인당 1만원

▲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 : 1인당 1만원

✔ 교원공제 6만원은 뭘까?

2002년도 단체협약 세부 합의 사항에 따라 일인당 3만원씩 (600원 x 50구좌) 매달 교원공제비 명목으로 지급하던 급여로, 2017년도 단체협약 세부합의 사항에 따라 2018년도부터는 3만원(50구좌)인상하여 일인당 6만원씩 (600원 x 100구좌)지급하고 있다.

2. 승급에 대해

매년 교섭을 통한 임금 인상과 별도로 자동으로 기본급이 인상된다. 즉, 1년마다 호봉이 올라간다(활동보고 뒤호봉표 참고).

그런데, 입사한 지 4년이 되면 승진으로 인해 호봉이 껑충 뛴다. 9급으로 입사했으면 8급으로, 8급으로 입사했 으면 7급으로 4년 뒤 자동 승진한다. 두번째 승진은 인사 평가 등에 따라 4년에서 6년 사이에 차등적으로 이뤄진 다. 자동승진은 2단계까지만 있다.

3단계 승진은 심사승진으로 승진 자격은 2단계 승진 후 6년경과 뒤부터 발생한다. 만약 정년퇴직 3년 전까지도 2 단계 승진 밖에 못한 상태라면 이 시점에서 무조건 3단계 승진을 하게 된다.

✔ 자신의 인사고과가 궁금하다면?

인사팀에 방문해 "근무성적평정 열람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원본을 볼 수 있다. 만약 불편하다면 노동조합에 인사고과 열람을 위임할 수도 있다.

2.2 근로조건이 궁금하다

1.1 근로 조건 (공통)

- ① 근무는 상근근무와 교대근무로 구분한다.
- ②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 다.
 - (1) 상근근무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시업시각은 08:30 종업시각은 17:30을 원칙으로 한다.
 - (2) 의료원은 교대근무자에 대해 가능한 주당 연속 2일의 휴일 및 휴무일이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③ 유해사업장 종사자는 1일 6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1 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으며, 2시간 이상 연장근로 시 식사를 제공한다.
- ⑤ 근로조건은 의료원과 노동조합이 동등한 입장에서 변경 및 결정해야 한다.
- ⑥ 야간 노동자에게는 조식을 제공한다.

Part 2.11 임금에 관해 알고 싶었던 것들

- ② 의료원은 인력부족과 연차 강제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형근로를 금지하며, 근무시간당 적정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 ⑧ 임부 및 산후 6개월 미만의 산부에게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다.
- ⑨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 ① 시간외 근무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있다. 시간외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부서 장의 사전허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후 신 청과 부서장의 확인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① 주말 근무 시 대휴
 - : 상시근무자가 월 3회 이상의 주말근무 시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부서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간외수당 대신 대휴 를 받을 수 있다.
- ②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조합원이 신청하는 경우 1일 2시간 근로단축을 할 수 있다. 단, 병동 근무자에 한하여 본인이 원할 시 1일 2시간에 대해 8시간 누적, 적치 사용이 가능하다.

1.2 근로 조건 (병동)

- ① 간호본부 병동 교대근무자는 8시간 근로시간에 휴식시간 이 포함된다.
- ② 3교대 근무에 대해 DUTY당 적정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 ③ 밤 근무 후 2일의 OFF를 보장해야 한다.
- ④ E 근무 다음날 D근무를 금지한다.
- ⑤ 연속 5일 이상의 근무를 금지한다.
- ⑥ 근무표는 30일 전에 공지하도록 해야 한다. 단, 사직서와 산가원 등은 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 ⑦ 밤 근무 간격은 고정배치하고 일방적 변경은 금지한다.
- ⑧ 생리휴가는 연차휴가보다 우선해 근무표를 작성한다.
- ⑨ 시간외 근무가 30분 이상 발생할 경우 전자결재를 통해 시간외 근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⑩ 교대근무자가 병동의 사정에 의해 근무 시작전 24시간 이 내 근무표 변경으로 OFF자가 출근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 ① 밤 근무는 월 6일 이하, 연속 밤 근무는 2일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사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간호본부 간호사는 정년퇴직 3년 전부터 개인이 동의하지 않을 시 로테이션을 하지 않는다.

2. 휴직의 종류

질 병 화	정의	-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의사 진단이 60일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 임산부가 절대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 시
직	기간	재직 기간 중 1년 이내
	급여	9개월까지 통상임금 지급
	용도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조합원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때
	기간	1년 이내
육아휴직	급여 외	월 50만원 지급. 의료보험료, 사학연금은 본인 부담금도 의료원에서 부담함 상여금, 정근수당 산정 시 휴직기간에 비례 하여 조정 감액됨 근속년수에는 포함되고, 승진 소요 연한 에서 불이익 없음 휴직 종료 후 12개월 내 무급휴직 신청불가
간병형	용도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휴 직	기간	6개월 이내
	급여	무급

마대하저	용도	 대상: 5년 이상 근속 직원 동일부서(병동) 내에서 동일기간 중 2명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최소 3개월 전에 휴직을 신청하여야 하며, 의료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한다.
	기간	최대 6개월 (10년 이상 근속인 경우 최대 1년)
	7IEł	 휴직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개인 부담금은 휴직자 본인이 부담한다. 휴직 후 복직을 원칙으로 하고 복직 후 휴직기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기간을 채우지않고 사직 시 휴직발령일이 퇴직일로 한다.

3. 휴가의 종류

연차유급휴가	기본 지급 요건	 1년 간 80%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휴일, 휴가, 휴업, 업무상 요양, 산·전후휴가는 출근으로 간주) 1년 미만 노동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2017.5.30. 입사한 자부터 적용) 			
.,	보상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익년 3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대상	전체			
하 계 휴 가	기간	1년(회계연도 기준)에 4개의 하계휴가 발생 (신규입사자는 년도 기준 매 3개월 이상 근무시 1일의 하계휴가를 익월 1일에 부여한다.)			
	보상	미사용 시 보상 없음			
생	대상	여성근무자 ※ 산모는 월 1일 정기검진위한 유급 휴일			
리 휴 广	기간	월 1회			
	보상	미사용 시 익월 급여 지급 시 42,000원의 보건수당을 지급.			

Part 2.2 근로조건이 궁금하다

	대상	임산부
산 전 후	출산시	휴가 : 90일 (산후 60일 이상 확보) 유급 수유시간(생후 1년 미만) : 1일 2회 30분씩
후 휴 가	유산 조산 사산 시	임신 8개월(197일) 이상 : 90일 4~7개월 : 45일 이내의 유급휴가(진단서 필요) 4개월 미만 : 10일의 유급휴가 (의사소견서 있을 시 45일 이내 가능)
ᇷ	대상	업무 외 상병으로 요양 시. 의사진단서 필요.
	기간	연 60일 한도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축소 없음. 호봉승급 시 불이익 금지

2.3 단체협약으로 맺은 후생복지

의료원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및 직 원에게 다양한 후생복지를 제공한다.

✓ 어린이집 (문의 노사협력팀 ☎ 9887)

대상	맞벌이 부부의 12개월 이상~6세 이하의 아동 ※ 한 부부당 한 명의 자녀가 원칙임.
모집시기 매 학년도 말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 입소 순위를 결정함. 결원시 수시 모집	
어린이집 위치	주차타워 뒤편 2층 양옥 경희의료원 어린이집 (회기동 109-68호) ☎ 9850
운영시간	평일 및 토요일 07:00 ~ 22:30

✔ 자녀학비 보조 (문의 노사협력팀 ☎ 9887)

자녀 대학 입학	- 입학 축하금 300만원 - 경희대 재학 시 등록금 전액 (축하금은 제외)
-------------	--

✔ 통근버스 (문의 총무팀 ☎ 9804)

출근시	버스	상계10단지(07:10)→ 노원역(07:15)→ 상계백병원앞(07:18)→ 중계역(07:20)→ 롯데마트앞(07:23)→중계근린공원(07:25)→ 하계역(07:27)→ 서울과학기술대(07:29)→ 공릉역(07:30)→ 태릉입구역(07:33)→ 월릉교(07:34)→ 돌곶이역(07:40)→ 이문동(07:41)→ 의료원(07:50)→ 청량리역(08:00)→ 의료원(08:10) ※ 2-3분정도 일찍 출발하는 경우 있음
	마을 버스	무료 이용 시간 : 06:00 ~ 08:10 ※ 승차 시 직원카드 제시
퇴근시	버스	의료원 출발 (17:45) - 출근 노선의 역순

✓ 기숙사 (문의 간호본부 ☎ 8793)

대상	지방에서 올라온 미혼 간호본부 직원 (3년)
비용	냉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등 주거비용 15만원

Part 2.3 단체협약으로 맺은 후생복지

✓ 의료비 감면 (문의 원무과 ☎ 9610)

	재직 中	정년퇴직 /명예퇴직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
본인	본인부담금 50%	본인부담금 30%	본인부담금 20%
직계 가족	외래 : 본인부담금 30% 입원 : (급여) 본인부담금 50% (비급여) 본인부담금 30%	배우자만 본인부담금 20%	감면 없음
본인 형제 자매	본인부담금 25% 동서종합건진비 30%	감면 없음	감면 없음

- ※ 강동경희대병원을 이용해도 동일하게 감면
- ※ 본인부담금 감면에는 급여·비급여 항목 둘 다 포함
- ※ 비급여 항목 중 직원 감면 적용 안 되는 것도 있음

✔ 주택자금 지원 (문의 노사협력팀 ☎ 9887)

대상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1년 이상 근속)
대출한도	최대 5천만 원 (본인 신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횟수	한도 내 최대 2회
이자율	2%
상환	익월부터 '원금 + 이자' 5년간 상환

Part 2.3 단체협약으로 맺은 후생복지

✔ 장례식장 비용 감면

감면 범위	안치료, 빈소사용료(특B급 이하), 염습료, 쓰레기 수거료
라면 대상 및 라면	 본인: 100% 직계가족 (배우자의 부모 포함): 50%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 본인: 50% 직원 추천: 10%

운영	7월 중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이용	2박 3일
신청 방법	회보 및 게시판을 통해 공고한다. 소정의 신청양식을 노사협력팀에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 경조사시 경조금 및 휴가 (문의 노사협력팀 ☎ 9887)

사유	대상자	휴가일수	경조금
	본인	7일	20만원
결혼	자녀	2일	20만원
- EL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공휴일 제외)	

Part 2.3 단체협약으로 맺은 후생복지

	본인, 1	배우자	3일	10만원
회갑	본인 및 1 직계:		2일	10만원
분만	처의	분만	10일 (출산 한 달 이내)	
	배우	-자	7일 (+근조화한)	50만원
	본인 및 배역	구자의 부모	7일 (+근조화한)	20만원
	본인의 전	직계비속	5일 (+근조화한)	20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3일 (+근조화한)	20만원
	본인의 오	기조부모	3일 (+근조화한)	20만원
상	본인 및 1 형제		3일	
	본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2일	
	업무 상 본인		유족보상금 : 1,3 장례비 : 평균임금	_
		업무 외	유족위로금 : 평균임	금 3개월 분

※ 기타 경조금 받는 곳

사학연금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망 시 조의금 지급 (3년 내 조의금을 신청해야 함)		
교원공제	* 출산 축하금 첫째 - 10만원, 둘째 - 10만원, 셋째이상 - 30만원		

	* 본인결혼 - 선물 증정 (3년 내 신청해야 함)		
	본인 결혼	15만원, 출산 선물	
	정년퇴직 중간퇴직	조합가입 후 10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노동조합		금액 : 15,000원 x 총 가입 기간 (만 1년마다)	
	본인 사망	1,000원 x 조합원수	
	부모 사망 (본인, 배우자)	10만원, 근조화환 제공 (조화 누락 시 10만원 추가지급)	

- ※ 노동조합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은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경과 시 권리가 사라진다.
- ※ 징계 또는 승진으로 조합원 자격이 정지 혹은 상실된 자, 퇴 사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노동조합 창립 기념품

산별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창립일인 1998.2.27을 기념해 매년 1회 전 직원에게 지급한다.

✔ 직원식대

식대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현재 직원식대는 5,500원 (본인부담 2,750원 + 의료원 지원 2,750원)

Part 2.3 단체협약으로 맺은 후생복지

✔ 해외연수

모범직원 및 장기 근속자에 대해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 대학 시설 이용 혜택

	일 반	20% 감면
사회교육원	헬 스	50% 감면
	신청방법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경영대학원	
대학원	공공대학원	50% 지원 (2년 이상 재직)
내옥편	교육대학원	
	간호대학원	100만원 지원(21년 9월 1일 개원)
사이버대학교	등록금 70% 면제 (3년 이상 재직 및 직전학기 성적 2.3이상일 경우)	
경희대학부	등록금 65% 면제 (학년별 정원 10% 초과시 성적순에 의해 선발)	
국제교육원	일부강좌 (80% 이상 출석시 100% 지원, 동일 과정 2회 이상 지원 불가)	

✔ 장기근속 포상

10년	표창장 및 포상금 15만원
20년	표창장 및 포상금 30만원
30년	표창장 및 포상금 50만원
40년	표창장 및 건강검진권 2매

✔ 고용보험

비정규직 채용 즉시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 건강

건강 검진 (매년 1회) 예방 활동	- 에이즈검사 - C형 간염검사 - 유방초음파 (매년) - 내시경검사 (매년) - 혈액암검사 CEA, AFP, CA125, PSA - 복부초음파검사 (2년에 1번, 만40세 이상) - 자궁암 (40세 이상, 원하는 경우) - 흉부 X-선 2차 촬영 후 유소견자는 객담검사 - 직무상 스트레스 설문조사 - 입사 시 여성에 대해 풍진예방 접종 실시 채용 시 경추, 요추 X-선 검사 - 연 1회 위내시경검사 무료 -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탄력스타킹(연 2켤레), 허리보호대(연 1개), 손목보호대(연 1개) 중 본인이 택한 1개의 물품 지급(대상: 간호본부, 영양팀(여),
	영상의학과(여), 의무기록실, 감염관리실, 약무팀, 치대병원 조무사, 치대병원 위생사, 치대병원 방사선사(여), 기공실)
의무실	 - 위치: 문화복지센터 지하1층 (담당: 보건관리자, ☎ 2942) - 이용: 상처소독 및 간단 의약품 비치 (두통약, 소화제 등) - 각 병동 및 부서에 의약품 비치 (두통약, 소화제)

Part 2.3 단체협약으로 맺은 후생복지

업무상 질병, 부상	진료비	의료원이 우선 지급한 후 공단에 청구
	후유증	 종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타 업무에 종사 전직 후에도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직계비속, 배우자 우선 채용
	결핵	공단에서 인정받지 못한 모든 결핵은 원내 공상으로 인정함 (진료비에 한해, 치료기간 1년 이내)

✔ 자정이후 퇴근 지원

- * 교대근무자가 시간외근무 사유로 자정 이후 퇴근하는 경우, 업무용 택시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귀가를 지원한다.
- * 운영방법, 시간, 지역 등 세부사항은 부서에 개별 공지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후생복지

- 문병 : 원내 입원 시 위로 선물 지급
- 출산(본인 또는 부인) : 소정의 선물 지급
- 도서대출 : 매월 최신도서 구입 (대출기간 2주, 1인당 2권)
- 우산대여 : 갑자기 눈·비올 때 조합으로!
- 컴퓨터 · EMR 이용가능
- 커피 무료: 에스프레소 머신 구비
- 코팅기 & 컬러프린터 무료 이용
- FAX : 보내는 것도 받는 것도 O.K 02) 966-2466
- 쉼터 제공, 안마의자도 있어요!

☎ 이용문의 8080